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12호
----------	--------

제출년월일 2022. 11. .
제출자 복지과장

1. 제안이유

신축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나.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
- 다. 기금 설치의 목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규정(안 제1조)
- 라.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조)
- 마. 기금운용·관리는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나. 관계법령·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3년도 1회 추경예산 1,000,000천원 반영(비용추계서 별첨)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10. 12. ~ 11. 1.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나) 경기도 : 복지사업과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김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
4. 기금의 운용 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에 주소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센터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보증금 대여는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자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적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잔액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② 조례 개정 후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사회복지기금결산보고서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제외한다.

소관 실·과·소		복지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복지과장 강영화
	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양현주(☎26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의7(기금의 지도·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70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제2조 (기금의 재원) ①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1.10>

1. 정부 또는 김포시의 출연금<개정 2017.11.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개정 2017.11.10>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70억원으로 하고,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개정 2007.4.5, 2015.9.30)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3.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장애인복지계정·보훈복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1.4, 2017.11.10)

② 시장은 기금을 김포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

다.(신설 2004.12.30)

④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제4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11.10>

[본조신설 2015.9.3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0.1, 2017.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0.1, 2017.11.10, 2017.11.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기획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2008.10.1, 2017.11.10, 2018.9.3.,2020.12.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0.1, 2015.9.30)

1.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개정 2017.11.10>

2.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서안<개정 2017.11.10>

3.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1.10>

4.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의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1.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11.1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10>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기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개정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주사(개정 2008.7.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4.12.30)

1.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
2.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개정 2017.11.10>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4.12.30., 2017.11.10)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 라 한다)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 이라 한다)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단, 수급자 재산소득기준의 150퍼센트미만인 자에 한한다. 이하 “생계곤란자” 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급박하게 보호가 필요한 자의 생활안정자금 보조사업 (개정 2014.2.12, 2017.11.10)

제13조 (지원신청) ①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생계곤란자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복지기금심의 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4.2.12)

제14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자활사업 자금대여) ① 자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파산, 회생, 해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5.9.30]

제16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5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2.12.)

제3장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제17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1.10>

제18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7.2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9.7.26>
3.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 (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제20조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보훈대상자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지원사업
3.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11.10>

제21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

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보훈대상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1.4)

2.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훈복지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전항의 신청자중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2조 (지원사업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
4. 기금의 운용 수익

나. 비용 발생 요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 자활근로 참가자에게 자금 대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
-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출연금 편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004,000	1,024,500	1,029,590	1,035,190	1,041,300	5,134,580
자활기금	예치금	1,004,000	1,020,500	1,009,590	1,015,100	1,021,110	5,070,300
자활근로사업 지원	보조금	0	4,000	20,000	20,090	20,190	64,28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

○ 기획담당관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복지과 과장 강영화 팀장 고명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전입금	1,000,000	0	0	0	0	1,000,000
	예치금 회수	0	1,000,000	1,004,500	1,009,500	1,015,000	4,029,000
	자활근로 수익금	4,000	4,500	5,000	5,500	6,000	25,000
	공공예금 이자	0	20,000	20,090	20,190	20,300	80,580
세 출							
	예치금	1,004,000	1,020,500	1,009,590	1,015,100	1,021,110	5,070,300
	자활근로사업 지원	0	4,000	20,000	20,090	20,190	64,28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4,000	1,024,500	1,029,590	1,035,190	1,041,300	5,134,580
	지방세수입						
	전입금	1,000,000	0	0	0	0	1,000,000
	예치금 회수		1,000,000	1,004,500	1,009,500	1,015,000	4,029,000
	세외수입	4,000	24,500	25,090	25,690	26,300	105,58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